

보도 일시	2022. 2. 16.(수) 10:00	배포 일시	2022. 2. 16.(수) 08:3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유통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오재철 (044-200-4958)
	대리점거래과	담당자	사무관 강승빈 (044-200-4960)

##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- 교육 수탁기관 지정기준,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 등 규정 -

-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개정 대리점법의 시행(2022. 6. 8. 예정)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‘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’을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.
- 개정 대리점법에 따르면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업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
  -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기준을 ①시설, ②인력, ③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세가지 측면에서 규정했다.
- 또한,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,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,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
  -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▲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, ▲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.

# 1

## 개정안 주요 내용

### 가. 교육 수탁기관 지정기준 설정 [안 제7조의2 및 안 [별표 1]]

- 개정 대리점법에 따르면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업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이에,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기준을 ①시설, ②인력, ③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정하였다.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  - ① 우선, 시설 측면에서 ▲150㎡ 이상 규모의 강의실과 ▲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고,
  - ② 또한, 인력 측면에서 ▲대학교수, 판·검사 및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, ▲수탁기관을 운영할 관리직원을 3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였으며,
  - ③ 아울러,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측면에서 ▲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 또는 대리점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실적이 있거나 ▲30건 이상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처리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.

### 나. 동의를결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 규정 [안 제18조의2]

-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하고, 사업자가 동의를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,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이에,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▲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, ▲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.
  -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며,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이를 미납하는 경우 국세청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.

## 2

##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

-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·시행되면 교육·상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리점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,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  
-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급업자 및 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.

### ※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

▶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·수정 의견과 그 이유), ②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\* 우편 : (30107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(어진동, 단국빌딩)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

\* 팩스 : 044-868-3823

### [붙임]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7조의2(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기준)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“시설·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은 별표 1과 같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8조의2(이행강제금의 부과 등)</p> <p>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·납부·징수·환급 등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영 제23조제1항의 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”은 “이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”으로, 같은 영 제23조제1항의 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”는 “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를결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동의를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의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2항의 “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정조치”는 “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를결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3항의 “시정조치”는 “동</p>

의의결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4항의 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”은 “이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”으로, 같은 영 제23조제5항의 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”는 “이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7항의 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”는 “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7항의 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”는 “이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7항의 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”는 “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”로, 같은 영 제24조제1항의 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”는 “이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”로 본다.

②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채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영 제25조제1항의 “법 제16조제3항에 따라”는 “이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”로 본다.

제19조(과징금 부과기준) ① (생략)  
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19조(과징금 부과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 
② -----  
----- 별표 2와 -----.

<p>③ (생략)</p> <p>제20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<u>별표 2</u>와 같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과태료 부과기준) ----- ----- ----- <u>별표 3</u>과 --.</p>
--	--

**[별표 1] 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**

1. 시설 기준

가. 바닥 면적이 150㎡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두어야 한다. 다만, 강의실은 수탁기관이 직접 소유하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.

나.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2. 인력 기준

가.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
나. 가목의 전임강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1) 대학에서 법학·경제학·경영학 중 한 가지 이상을 전공한 자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
- 2) 판사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
- 3) 대리점거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
- 4)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(재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)

다. 관리직원은 3명 이상 두어야 한다.

3.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기준(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)

가.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공급업자 50개 이상 또는 대리점 100개 이상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·연수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

나.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실적이 30건 이상일 것